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97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경제국장 심혁보)

「약사법」, 「의료기기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위임사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중복, 불명확한 표현 삭제 등 조문 체계 정비(안 제1조~제4조)

나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(안 별표 제1호 하목, 제28호, 제29호 등)

- 「약사법」 개정에 따라 ‘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’ 신설
- 「의료기기법」 개정에 따라 ‘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’ 신설

다. 누락된 위임사무 정비(안 별표 제12호 라목~파목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약사법」 제21조의3, 제46조의2, 제76조, 제77조, 제89조, 제98조
- (2) 「의료기기법」 제18조의2, 제32조, 제36조, 제39조, 제56조
- (3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~8조, 제12~13조, 제41~46조, 제48조, 제51조의5, 제6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(2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2025. 9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약사법 개정

-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¹⁾의 지정,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의 수리를 맡게 되었음.

○ 의료기기법 개정

- 2023년 8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하여 구청장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의 수리를 맡게 되었음.

1)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

나. 검토 내용

○ 조문 체계 정비

-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이 강남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임을 간결하게 기재한 것임.
- 안 제2조는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임을 조 제목에 명시하고 조문에 기재된 현행 일선기관은 보건소장 및 동장이라고 구체화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다듬었음.
-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일부 사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한 사무를 지휘·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, 사무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한 것임.
- 안 제4조는 이미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여,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과를 확인함.
- 안 제5조는 현행 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것임.

○ 위임사무 신설

- 안 별표 제1호 하목에서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무, 안 별표 제28호에서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는 「약사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임사무임.
- 안 별표 제29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는 「의료기기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임사무임.

○ 누락된 위임사무 정비

- 안 별표 제12호 가목부터 차목까지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무인데,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기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 현행 가목부터 다목의 내용은 순서를 미루어 카목부터 파목으로 변경함.

다. 종합 의견

○ 사무의 신설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는 2023년에 정해진 것인데, 약 2년의 기간 동안 사무의 위임 여부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경과하였음.

○ 누락된 위임사무 정비

- 안 별표 제12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내용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2011년에 정비되고 2012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, 지금까지 이미 일선에서는 실무를 해왔으나 위임사무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경과연수가 과도하게 오래된 것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.

○ 향후 과제

- 위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.

[1] 제도 개선의 필요성

- 현행 방식에 따르면 이 조례에 명시된 위임사무를 업무 추진 상황에 부합하도록 정비·개정하기 위한 점검(신청) 요청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음.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연 1회 접수 공지를 보내야 비로소 주무부서가 반응하는 현행 방식보다는,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위임사무 주무부서에서 곧바로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통지하는 절차를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. 주무부서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때 위임사무로 지정할 내용을 미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받아두었다가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됨.

[2] 적극행정의 이행

- 그리고 접수받는 수동적인 형식의 제도 운영에 국한하지 않고, 구청장 사업 관리 총괄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정 사항이 없는지를 탐색하여 적극행정 이행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.

※ 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 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70호, 일부개정 2025. 4. 1.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부조직법 [시행 2024. 6. 27.] [법률 제20289호]

제6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[시행 2025. 7. 1.] [대통령령 제35588호]

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"행정권한"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